



이의 제기 권리

랜더만법에서

조치의 통지 (NOA)

리저널센터가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경우 귀하에게 NOA를 보내야 합니다.

NOA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



- 리저널센터의 결정.
- 결정이 내려질 날짜.
- 결정의 사유.
-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.

NOA는 알기 쉬운 문체의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
NOA를 받는 시기

30 일 리저널센터의 아래 조치 이전

일

귀하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 또는 변경하거나 리저널센터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자격을 종료.

5 일 리저널센터의 아래 조치 이후

일

귀하가 원하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리저널센터 이용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.

귀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귀하와 리저널센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리저널센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의 제기 절차에는 아래 세 부분이 있습니다.

- 비공식 회의
- 조정
- 청문회

이용하려는 이의 제기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
귀하는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아래의 권리가 있습니다



통역사를 제공 받음



리저널센터 기록에 접근



이의 제기 중 지원 받음



다른 조정자 또는 청문관 요청



리저널센터는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.

청문회 중 귀하의 권리



서면 문서를 증거로 제공함



증인이 증언하도록 함



리저널센터의 증인에게 질문을 요청함

이의 제기 방법

발달장애서비스부에 이의 제기를 보내십시오.

이의 제기 시기

이의 제기는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.



현재 서비스의 유지

조치 통지를 받은 후 30일 및 서비스 종료 날짜 이전에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.



모든 기타 이의 제기

조치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.

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

옴부즈맨 사무소

(877) 658-9731

Ombudsperson@dds.ca.gov

클라이언트의 권리 옹호자

북부 캘리포니아

(800) 390-7032

남부 캘리포니아

(866) 833-6712

가족자원센터

<https://frcnca.org/get-connected/>



자세한 내용은 QR
드를 따르십시오.